

活カ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TEL. 3673-2851~3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e-mail: ktpa8769@chollian.net

'99 항별 예산배정 조기발주 박차

계속투자 29개항에 1,015억원, 유지보강 21개항에 304억원

해양수산부는 올해 계속투 강 21개 어항에 대한 항별 자 대상 29개 어항과 유지보 예산배정을 마쳤다.

일반회계 계속투자대상 12개항 항별예산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항명	총사업비	'98까지	'99배정	잔사업비
계	258,140	101,172	33,200	156,968
울도	10,897	5,934	1,800	4,963
풍남	19,957	9,009	3,000	10,948
초도	27,436	12,147	3,300	15,289
남도	21,630	9,565	2,800	12,065
구조라	8,747	3,173	1,500	5,574
삼덕	20,797	8,379	2,800	12,418
매물도	20,845	10,522	3,000	10,323
보옥	28,568	6,510	3,900	22,058
독암	28,525	7,881	3,300	20,644
구산	27,252	6,092	3,300	21,160
오산	24,005	8,371	3,500	15,634
대포	42,953	982	1,000	41,971
전장포	6,530	6,530	-	-
광암	12,951	5,219	-	7,732

일반회계 유지보강 21개항 항별예산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항명	총사업비	'98까지	'99배정	잔사업비	비고
계	303,177	180,158	30,442	123,019	
덕적	7,456	286	600	7,170	
녹동	23,565	18,785	2,300	4,780	
국동	25,327	14,014	1,500	11,313	
안도	9,804	7,358	700	2,446	
정자	14,192	6,787	700	7,405	
거진	11,787	8,770	600	3,017	
아야진	8,132	7,712	420	420	'99완성
장호	10,666	5,831	4,835	4,835	'99완성
임원	11,392	439	1,000	10,953	
남애	7,302	3,592	700	3,710	
청산도	3,486	1,820	700	1,666	
서망	12,493	11,438	500	1,055	
어란진	7,071	5,071	1,000	2,000	
감포	26,757	8,767	2,587	17,990	
대진	13,227	7,934	2,400	5,293	
저동	36,888	23,904	2,700	12,984	
죽변	20,254	7,689	1,500	12,565	
대보	6,835	4,313	800	2,522	
모슬포	20,712	16,559	1,500	4,153	
신양	18,558	15,197	1,700	3,361	
오천	7,273	3,892	1,700	3,381	
어유정항 등 16개항	-	-	-	-	

농특회계 계속투자대상 17개항 항별예산 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항명	총사업비	'98까지	잔사업비	'99배정	비고
계	582,845	371,542	211,303	68,295	
대변	42,374	18,793	23,581	5,000	
시산	22,874	17,127	5,747	3,000	
지세포	34,448	21,465	12,983	3,600	
안북	38,278	21,788	16,490	5,000	
수산	42,664	22,209	20,455	5,000	
말도	14,775	11,468	3,307	3,307	'99완성
어청산	45,676	29,930	15,746	5,000	
소흑산	98,794	77,080	21,714	6,000	
사동	10,290	8,290	2,000	2,000	'99완성
여서	39,529	22,086	17,443	5,400	
수품	23,883	16,019	7,864	4,200	
축산	24,602	14,047	10,555	3,800	
현포	49,381	35,790	13,591	5,300	
김녕	17,198	13,959	3,239	3,239	'99완성
도두	19,075	17,415	1,660	1,660	'99완성
홍원	15,758	9,347	6,411	2,600	
모항	43,246	14,729	28,517	4,189	
물건항 등 2개항	-	-	-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반 회계에서 울도 풍남 초도항 등 계속투자대상 12개 어항에 332억원, 덕적 녹동 국동 항 등 유지보강 21개 어항에 304억4천200만원 그리고 농특회계에서 대변 시산 지세 포항 등 계속투자대상 17개 어항에 682억9천500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항별 예산배 정 표 참조>

이와함께 공공공사 조기집 행의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 어항공사를 위한 설계서를 서둘러 작성, 조기에 발주키 로 했다.

어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1월5일 제199회 국회 에서 어항시설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의 예치무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항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어항법 신 ·구 주요조문 대비표 3~4면 에 상보>

해양수산부는 행정규제가 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업비용 예치제도를 폐지하는 등 어항시설에 관 한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사 업시행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제를 폐지 또 는 완화하고, 어항시설을 설 계하는 때에는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내진성을 고려하도 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개정 어항법에는 어항시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경 미한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없이 이를 시 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 항시설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사 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 무제도를 폐지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지진 발 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을 설계 하는 때에는 지진에 대한 안 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 편 어항시설사업계획을 변경 ·폐지하거나 사업시행을 중 지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 관리청에 신고하거나 관리청 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

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어항시설사업 시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지난 한해가 가고 희망찬 199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어항인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일익 번창과 평안 이 내내 함께 하시길 먼저 기원드립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지난 한해는 정말 돌이켜 보기조차 싫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IMF사태가 몰고온 충격은 18년만의 마이너 스 성장과 적자재정편성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고조, 자산평가절하 등의 고통 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한해였 습니다.

다행히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강한 개혁의 칼날을 들 이대면서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집중한 결과 IMF빚 29억불을 갚 고도 470여억불의 가용외환보유 고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수출 역시 400억불 흑자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에는 늘 이렇 게 장미빛 사진만 펼쳐지는 것 은 아닙니다. 위험수위에 이른 실업문제와 눈덩이처럼 불어나 는 외채이자, 그리고 낙관불허 의 수출 등 곳곳에 잠재한 시한 폭탄이 우리의 경제회생의지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난국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우 리 국민은 이에 상응하는 범국 민적 자각운동을 절실히 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의 일환으로 강력한 개혁과 규제철폐 그리고 총체적인 왜곡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인 제2 건국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항인 모두에게 의식개혁을 위한 제2 건국운동 동참을 적극 권합니다. 제2 건 국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왈가왈부 목소리가 들리고 있 으나 이는 전적으로 운용방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희생과 사명감을 발휘해 자발적이고 상향식의 운동 으로 승화시킨다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범 국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새해에 우리 어항인에게 닥칠 도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해양분할의 신해양 질서와 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우리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항인

의 노력과 의지가 우리 수산업의 발전과 방 향을 좌우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상 주장해 왔듯이 새해에는 기필코 우 리의 어항어촌이 선진어항어촌으로 종합 개 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땀과 슬기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산예산의 구조를 수산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처럼 어항부문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어항예산을 단계적 으로 수산예산의 6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과 같은 나뉠떡기식 예산구조로 는 수산업의 기반구축이 될 어 항개발은 요원한 길이 될 뿐입 니다.

또한 어항어촌건설에 따른 정 책적 배려 역시 절실한 실정입 니다. 특히 이는 국토의 균형개 발, 성장과실의 균점이란 측면 외에도 고용창출, 경기부양과 맞물리는 사항이므로 기필코 우 리 어항인이 달성해야 할 목표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 해 한국어항협회의 사업계획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 니다.

첫째, 21세기 어항어촌 발전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둘째, 어항어촌개발을 위한 기술 발전과 홍보에 주력하겠습 니다.

셋째, 정부 위임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항인의 총의 결집 및 충실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 겠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이러한 과제는 많은 고통과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쉽게 성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난국을 극복 하기 위해 백작간두에 올라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올 한해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 어항인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한한 잠재력과 투철한 사명감, 그리 고 한 마음, 한 뜻의 희생정신 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지

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 해를 짜내 힘을 모은다면 능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늘 어려운 상황에서 꽃이 필니다. 그리하여 올 연말에는 우리 모두 난국극복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허리끈을 더욱 바짝 죄고 분발 매진합시다. 끝으로 어항인 여러분의 건투를 다시 한 번 빌어마지 않으며 항상 행운과 건강을 기 원드리겠습니다.

난국극복에 어항인이 기수가 되자

동

정

일본 수산청장 예방, 양국 어업협력 당부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김진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수산 해양관련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해양 수산의 세계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을 하는 한해가 될 것을 다짐하자고 당부, 15일에는 나가사키시와 일본 수산청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어업협정이 조속히 발효되고 양국 어업인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월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13일에는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19일에는 자민련 정책위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 21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

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13일에는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19일에는 자민련 정책위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 21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월5일 임원 및 본부 부서장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 12일에는 임협중앙회에서 개최된 농수축임협중앙협의회에 참석, 19일에는 새어업인상 시상식을 갖고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개최된 EEZ 어업대책자문위원회에 참석.

▲안성봉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은 1월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최상욱 남파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5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8일

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및 관련단체 신년교례회에 참석, 13일에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담이사회에 참석, 19일에는 전남대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임시총회에 참석, 29일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남지회 제1차운영위원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월5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8일에는 광주농고 총동창회 이사회를 주재.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1월4일 해양수산부 신년인사회에 참석, 8일에는 건설단체총연합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21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자문위원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5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6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신년하례회를 개최, 18일에는 건설공제조합 광주전남 자문위원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5일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8일에는 건설단체총연합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20일부터 23일까지는 경영자총협회 신년세미나에 참석, 22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1월5일 사천 위생매립장 공사현장에 출장, 6일에는 해남양촌제 현장 및 무안우회도로 공사현장에 출장, 18일에는 건설공제조합 광주전남 자문위원회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18일 하정화술장학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2일 제주상공회의소 신년하례식을 주재.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월16일 삼천포 공사현장에 출장.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공보관 강무현 △감사관 김성규 △국제협력관 박재영 △안전관리관 이용우 △해운선원국장 김종태 △항만정책국장 정윤기 △국립해양조사원장 김하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낙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성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종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이종천 △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장 양성직 △중앙공무원교육원 입교 안국전, 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파견 박원경 △국방대학원 입교 서종호 □과장급 전보 △비상계획담당관 송여용 △해양방재담당관 정형택 △해양정책과장 최정현 △항만물류과장 정무석 △항만개발과장 이재완 △지도육성과장 황수철 △세종연구소 파견 김형남 △한국해양연구소 파견 나태균 △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교과과장 김석진 △국립수산물검사소 분석과장 김영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송완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박규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이상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영조 △국제기구담당관 방기혁 △선박관리담당관 손재학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장황호 △전라남도 파견 정봉섭 □서기관 승진 △기획예산담당관실 지희진 △연안계획과 임현철 △해운정책과 박용문 △지도육성과 황지영 △항로표지와 권역동 △국립수산물검사소 정락희

▲국립수산진흥원 □국장급 전보 △동해수산연구소장 박차수 △서해수산연구소장 한

상복 □과장급 전보 △연근해지원과장 백철인 △생물공학과장 민광식 △적조생물과장 조용철 △어장환경과장 김진영 △동해수산연구소 증식과장 문영봉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지원과장 고태승 △남해수산연구소 어업지원과장 손승정 △남해수산연구소 증식과장 고창순

표 상

▲한국어항협회 어항청소선 904호 선장 허용만씨는 구립 31일 경남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난 한해동안 통영시 관내 항포구 청소 및 국토대청결 운동과 관련,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주소 변경

▲주식회사한영(사장 김한영)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1-3번지 삼안빌딩 5층으로 본사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3442-1161 ~ 3, 3442-1165.

▲이동섭씨(청소노동자육성회 사무총장)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4번지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327동 1502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의 비 남 부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동화건설주식회사(사장 김재우)
- 개인
 - ▲정영재씨(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전무이사)

2월중 어항청소선 운항계획

선 명	어항901호	어항902호	어항903호
운항지역	군산연안	목포연안	녹동연안
운항일수	22~27(6일)	22~27(6일)	22~27(6일)
어항904호	어항905호	어항906호	어항907호
국동연안	통영연안	포항연안	주문진연안
22~27(6일)	25~27(3일)	24~27(4일)	22~27(6일)



해양수산부 신년 인사회
지난 1월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수산 해양관련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신년인사회가 개최되었다.

강릉 연곡 등 어촌 8곳 본격개발

내년까지 280억 투입 ... 상반기 착공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0년까지 강릉시 연곡·사천진 등 전국 8개 어촌지역에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선계류시설 등 각종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생산·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강릉시 연곡·사천진을 비롯한 제주 성산·서부, 거제·사동 등 전국 8개 낙후지역을 신규 개발사업지로 선정, 오는 2000년까지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권역별 사업비 배정을 완료, 오는 3월까지 금년에 시행할 사업물량을 확정키로 했으며 상반기안으로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역별 시설기본계획을 보

면 우선 강릉시 연곡·사천진 등의 경우 올해 국고지원금 8억7천만원을 들여 수산물판매장,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건설할 예정이며 늦어도 5~6월까지의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지를 방침이다.

또 충남지역에서는 태안군 내 3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진입도로, 선착장, 물양장 등을 연내 확충키로 하고 1·4분기 착공목표로 시설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의 경우 경주, 영

덕, 울진 등 3개 시·군중 1개 권역을 우선개발대상지로 선정, 오는 3월부터 시설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총 10개 권역에 대해 종합개발이 검토되고 있는 전남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총 5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충, 어선계류시설을 비롯한 특산물 가공, 활어횟집 등 각종 어업관련시설을 건설해 어가소득향상을 지원키로 했다.

'제한적최저가' 대상공사 78억원미만으로 확대시행

국제입찰대상 정부공사의 금액이 종전 58억3천만원 이상에서 78억원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제한적최저가 낙찰제와 지역의무공동도급대

상공사도 종전의 58억3천만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폐지와 지역의무공동

도급 대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중순경 확정,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축소 등을 주요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이에 앞서 작년말에 국제입찰 등 각종 공공공사 입찰의 기준이 되는 정부고시금액을 SDR(국제통화기금특별인출권)당 1천560원으로 결정, 금년부터 정부공사의 경우 500만 SDR기준 78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국제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제입찰대상금

액인 78억원 미만 기준으로 제한적최저가낙찰제와적격심사제가 구분 시행되고 지역의무공동도급도 78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2월중순경 확정예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적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도 50억원 미만으로 줄여 시행할 예정이다.

감리회사 설립제한 완화

책임감리 100억원이상 공사로 축소

이달 하순부터 책임감리대 상공사가 50억원 이상 주요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주요공사로 축소된다.

또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자도 18년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하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감리예산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50억원 이상철도, 항만, 고속도로, 지하철 등 22개 공사로 규정된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 22개 공사로 축소토록 했다.

대신 100억원 미만 공사라도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자체 인력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고등학교 졸

업자도 졸업후 18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해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감리회사의 설립제한을 완화해 특급감리원, 건설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자 등 건설분야 종사자로 한정해온 감리회사 대표자격을 없애 누구나 감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어항법 신·구 주요조문 대비표

現 行	改 正
<p>第12條(事業施行者) ① (생략) ②管理廳이 아닌 者가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漁港施設의 補修·補強工事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工事を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管理廳은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施行者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漁港施設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預置하게 할 수 있다. ⑥·⑦ (생략) <新設></p>	<p>第12條(事業施行者) ① (現行과 같음) ②-----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現行과 같음) <削 除></p> <p>⑥·⑦ (現行과 같음) 第12條의2(耐震設計) ①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漁港施設을 設計하는 때에는 地震에 대한 安全性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耐震設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第13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漁港施設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3의2. (생략) 4.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생략) 第14條(事業計劃의 변경·廢止등) ①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한 者(이하 "非管理廳"이라 한다)가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을 변경·廢止하거나 事業施行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거나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의 協議를 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計劃을 변경·廢止하거나 事業施行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변경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 ④第23條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變更命令등으로 발생한 損失의 補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13條(缺格事由) ----- ----- 1.~3의2. (現行과 같음) 4. ----- 許可가 ----- ----- 5. (現行과 같음) <削 除></p>
<p>第15條(事業代行) ① (생략) ②非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 他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防波堤·物揚場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第13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승인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15條(事業代行) ① (現行과 같음) <削 除></p>
<p>第18條(法令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管理廳은 非管理廳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 代行하는 他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2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5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取消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施設物의 改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거나 사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생략)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 또는 승인을 얻거나 허위로 申告한 때 3.~5. (생략)</p>	<p>第18條(法令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 ----- ----- 許可를 ----- ----- ----- 許可를 ----- ----- 1. (現行과 같음) 2. ----- 許可를 받거나 ----- ----- 3.~5. (現行과 같음)</p>
<p>第19條(公益을 위한 처분) ①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2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5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取消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施設物의 改築을 명할 수 있다. 1.~2. (생략) 3. 公共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p>	<p>第19條(公益을 위한 처분) ①----- ----- 許可를 取消하거나 事業計劃의 변경·廢止, ----- ----- ----- 1.~2. (現行과 같음) 3. <削 除></p>

② (생략)
 第20條(보고·監督) ①管理廳은 第12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第15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漁港施設事業을 代行하는 他人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施行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管理廳은 필요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등에서 關係文書 또는 工事內容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第21條(土地·水面의 出入과 사용등) ①管理廳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漁港施設事業의 施行 또는 漁港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土地나 水面등에 出入하거나 他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土地나 水面등을 材料의 積置場, 通路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 기타 障礙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日時와 場所를 미리 그 土地나 水面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나 水面을 일시 사용하거나 竹木 기타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해뜨기전과 해진 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宅地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나 水面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第20條第4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2條(非常災害시의 土地등의 사용) 管理廳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天災·地變 기타 非常災害로 인하여 漁港施設事業의 施行 또는 漁港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家屋·船舶·土石·竹木·運搬具 및 기타의 工作物을 일시사용하거나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第23條(損失補償등) ①管理廳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第21條第1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 당해 損失에 대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第24條(竣工確認) ①·② (생략)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證을 교부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나 施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管理廳으로부터 竣工전 사용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第25條(漁港施設의 귀속 등) ①~④ (생략)
 ⑤非管理廳에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⑥·⑦ (생략)
 ⑧非管理廳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 또는 施設의 일부를 第3者에게 사용·受益하게 한 경우에는 海洋水産部令 또는 市·道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28條의2(漁港施設의 유지·관리등) ① (생략)
 ②管理廳은 第25條第4項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하는 者에 대하여 漁港施設의 管理·운영에 필요한 指示를 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現行과 같음)
 <削 除>

<削 除>

<削 除>

第22條(非常災害시의 土地등의 사용) -----
 ----- 施行하는 者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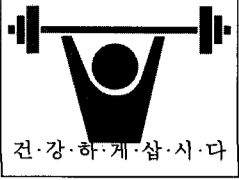
第23條(損失補償등) ①-----
 ----- 第22條 -----

 ②·③ (現行과 같음)

第24條(竣工確認) ①·② (現行과 같음)
 ③-----
 ----- 단 -----
 ----- 管理廳에 竣工전 사용의 申告를 하거나 管理廳으로부터 竣工전 사용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現行과 같음)

第25條(漁港施設의 귀속 등) ①~④ (現行과 같음)
 ⑤-----
 ----- 30年 -----
 ⑥·⑦ (現行과 같음)
 <削 除>

第28條의2(漁港施設의 유지·관리등) ① (現行과 같음)
 <削 除>



아침식사와 건강

충실하고 맛있는 하루위해
아침식사는 필수

아침시간이 바쁘다 보니 아침을 거르거나 서구에서처럼 커피만 마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 체중조절을 위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침식사는 생활의 활력소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식사이다.

우리가 수면 중에 아무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뇌와 근육 및 전신의 세포가 그 내부에서 비교적 활발한 신진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0~500칼로리 정도 즉, 가벼운 한끼분의 식사에 해당되는 양이 수면중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밤사이 소모된 에너지를 아침식사 후 점심까지 약 4~5시간의 에너지 보충을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오전 중 활동을 시작하기전 아침식사를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은 아침식사를 한사람보다 언제나 불충분한 하루의 음식물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대신 점심식사를 풍족하게 하거나, 점심도 간단히 한 경우에는 모자라는 분량을 저녁식사에서 충분히 보충한다고 해도 대개는 권장량의 영양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

한편 부족한 양을 저녁에 한꺼번에 먹거나 사람에게 따라서 밥참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런 경우 아침에 식욕이 떨어져 세끼의 식사가 연속적으로 늦어지고 다시 밥참을 먹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같이 아침식사를 거름으로써 하루에 섭취해야할 영양의 균형을 잃게될 뿐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로 위장 및 기타 소화장애를 초래하기 쉽다.

보통 아침식사는 1일 전체 영양필요량의 4분의 1내지 3분의 1을 공급하는 게 좋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칼로리식을 한다면 영양부족이 되기 쉬우므로 저칼로리라고 해서 채소나 버섯류 해조류 등으로만 식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반드시 적당한량의 단백질 식품, 지방식품, 당질식품을 한끼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즉 밥, 국, 김치는 5대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개 아침에 식욕이 떨어진 이유가 장이 둔화된 활동 때문이므로 일어나자마자 냉수나 찬우유를 마셔서 위장을 자극하거나 과일 주스 또는 요구르트도 좋다.

아침식사를 맛있게 하면 음식을 먹을 때의 예민한 감각으로 강렬한 자극을 주며 음식을 씹을 때 얼굴의 근육이 작용을 하면서 대뇌의 활기를 더해 주어 우리의 아침을 상쾌하게 할 뿐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 그날 하루동안 충실하고 맛있는 활동을 기약하게 해주는 것이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27]

第3章 基礎工

3.1.2 기초공의 공종

기초공에는 다음과 같은 각 공종이 있다.

방파제, 호안, 제방 및 계산안 기초공의 시공예를 그림 3.1.1~그림 3.1.3에 도시한다.

(1) 해저굴착공
지지지반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혹은 구조물 전면의 준설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정의 깊이 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는 공사이다.

(2) 치환사공
지반개량공법의 일종으로 준설선 등으로 연약토를 제거하고, 양질토로 치환시키는 공사이다.

(3) 사석공
기초공의 주요한 부분으로 하중을 받아 이것을 분산시켜서 기초지반으로 전달할 일적으로 사석을 투입하여 표면과 비탈면을 고르게 하는 공사이다.

(4) 피복 및 밀다짐공
기초사석이나 전면의 재래지반이 파랑이나 해류에 의하여 세굴되거나 산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중량이 큰 돌이나 이형밀다짐블록 및 방파블록 등으로 덮는 공사이다.
본 장에서는 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이형밀다짐블록이나 방파블록에 대하여는 제7장 콘크리트블록공에서 기술한다.

(5) 세굴방지매트유 부설공
구조물 전면의 재래지반이 파랑 등에 의하여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배후의 매립토가 뒤채움돌이나 사석의 간극에서 빨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설하는 것 및 케이슨 등의 활동저항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설하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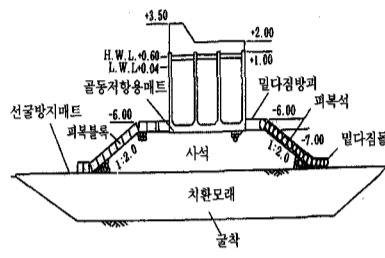


그림 3.1.1 방파제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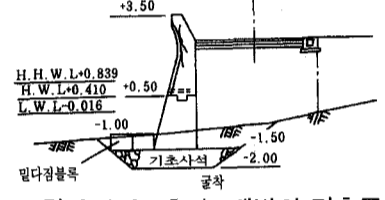


그림 3.1.2 호안, 제방의 기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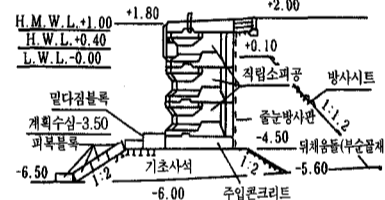


그림 3.1.3 계산안 기초공

3.2 굴착공

3.2.1 개설

방파제나 계산안 등의 어항구조물을 축조할 경우의 기초는 대부분이 해저에 만들어 지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한다.

a 재래지반의 암반표면이 풍화 등으로 딱딱하지 않아 그대로는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b 전면에 준설계획이 있고 구조물 기초면 높이를 준설계획수심보다 낮게 할 필요가 있을 때

c 지지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재래지반까지 굴착하고 치환공이나 사석기초를 실시할 때

굴착공사의 작업선에는 그레브준설선이 사용되는 일이 많다. 마무리 정밀도가 특별히 요구될 경우의 마무리 굴착이나 해저굴착폭이 좁아서 해저 굴착토량이 적을 경우 등은 그림 3.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잠수부가 에어리프트(air lift)를 사용하여 굴착을 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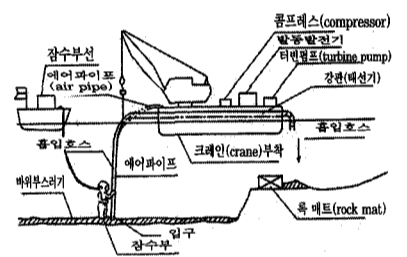


그림 3.2.1 에어리프트(air lift) 시공개념도

<3면에서 계속>

現 行	改 正
第33條의2(청문) 管理廳은 第18條第1項, 第19條第1項 또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3條의2(청문) ----- 許可를 -----
第3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告示한 경우 그 내용에 關하여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許可·認可·免許·승인·同意 및 協議등(이하 "許可·認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의 關係法律에 의한 許可·認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第3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1. (現行과 같음) 2. -----第5條 占用·使用의 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 -----第9條 -----第38條 -----海洋水産部長官 4. -13. (現行과 같음) ②----- -----第4條 및 第8條 -----第7條-----告示
3.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및 同法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과의 協議 또는 승인 4. -13. (생략) ②第7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公有水面埋立法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計劃을 수립하여 同法 第3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告示한 것으로 본다.	第40條(罰則) ----- 1. (現行과 같음) <削 除>
第4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40條(罰則) ----- 1. (現行과 같음) <削 除>
1. (생략) 1의2. 第15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漁港施設事業을 他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한 者	2. -5. (現行과 같음)
2. -5. (생략)	

第4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 없이 漁港施設의 補修·補強工事を 施行한 者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事業計劃을 변경·廢止하거나 事業施行을 中止한 者
3. 第15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 없이 他人으로 하여금 漁港施設事業을 代行하게 한 者
4. (생략)
5. 第24條第3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竣工確認證書를 교부받기전에 土地나 施設을 사용하거나 同條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竣工前 사용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한 者
6. (생략)
第43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없이 事業計劃을 변경·廢止하거나 事業施行을 中止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보고 또는 資料提出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4. 第25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無償使用·收益期間을 초과하여 사용·收益하게 한 者
5. 第25條第8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28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指示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報告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②-⑤ (생략)

第41條(罰則) ----- ----- <削 除>
<削 除>
<削 除>
4. (現行과 같음).
5.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竣工전에 土地 또는 施設을 사용한 者
6. (現行과 같음)
第43條(過怠料) ①第25條第7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無償使用·收益期間을 초과하여 사용·收益하게 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⑤ (現行과 같음)